

2019 규약 개정사항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비고 |
|------------------|--|---|-----------------|
| 규약 개정 | 제 8 조【조합원의 가입】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을 준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채용된 자는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다. | 제 8 조【조합원의 가입】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되며,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채용된 자는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다 | (문구수정) 논리명확화 |
| | 제 10 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본 규약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단,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으며,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4.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제 10 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본 규약에 따라 아래 각호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며, 본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4.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문구수정) 논리명확화 |
| | 제 12 조【조합원의 신분보장】 ② 신분보장 관련 비용은 신분보장 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시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각출하여 지급한다. | 제 12 조【조합원의 신분보장】 ② 신분보장 관련 비용은 신분보장 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시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부과금을 각출하여 지급한다. | (문구수정) 논리명확화 |
| | 제 21 조【의결사항】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6. 제 25 조【의결사항】 | 제 21 조【의결사항】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6 삭제 | (문구삭제) 의결중복건 |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비고 |
|----------|---|---|--|
| 규약 개정 | 제 23 조【성격】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를 제외한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23 조【성격】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를 제외한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문구수정) |
| | 제 25 조【의결사항】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임의 관한 사항 12.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 25 조【의결사항】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신임에 관한 사항 12. 조직형태 및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조직명칭의 변경방안마 련 |
| | 제 36 조【의결사항】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 3. 신분보장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징계, 조합간부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제대회 파견 및 해외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재가입 불승인에 관한 사항 | 제 36 조【의결사항】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 3. 신분보장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징계, 조합간부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제대회 파견 및 해외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재가입 불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 (조문추가) 일반적인 사항발생시 상무집행위 원회 처리방 안 마련 |
| | 제 45 조【소집 등】 회계감사위원회의 소집 등 기타 세부사항은 회계감사규정에 의한다. | 제 45 조【소집 등】 지방본부회계감사규정 및 회계감사위원회의 소집 등 기타 세부사항은 회계감사규정에 의한다 | (조문변경) |
| | 제 63 조【노사협의회 위원】 ① 본조합이 과반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②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63 조【노사협의회 및 위원구성】 ① 본 조합은 노사협의회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과반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본 조합이 과반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노조측 대표위원이 되며,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조문변경) 문구수정 |
| | 제 73 조【조합원 징계】 본 조합의 임원, 산하조직의 임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규약을 위반한 자 | 제 73 조【조합원 징계】 본 조합의 임원, 산하조직의 임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 (조문변경) 문구수정 |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비고 |
|----------|---|---|----------------|
| 규약 개정 | 제 80 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80 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조문변경) 문구수정 |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비고 |
|----------------|------|---|----|
| 규약 개정 부칙 | | 부칙(2019. 3.00) 제 1 조【시행일】본 규약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준용】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경과조치】본 규약 25 조 1 항 12 호는 중앙본부의 명칭변경에 한해 시행한다. | |